

## 4-나. 기회 균형 선발 결과

### 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: **대학**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공시시기】: 2024년 6월

【공시방법】: 간접입력(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)

【공시내용】: 2024학년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선발 결과

【공시양식】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4년 3월 학기 신입생(3월 기준))

(단위: 명, %)

| 기준<br>연도 | 총<br>입학자<br>(A) | 기회 균형 선발 결과 |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합계<br>(B)   | 제1호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장애인 등 대상자 |         |    | 농어촌 학생  |         |    | 특성화고교<br>졸업자 |         |    | 특성화고 등을<br>졸업한 재직자 |         |    | 기초생활수급자 |         |    | 차상위계층   |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정원<br>내   | 정원<br>외 | 소계 | 정원<br>내 | 정원<br>외 | 소계 | 정원<br>내      | 정원<br>외 | 소계 | 정원<br>내            | 정원<br>외 | 소계 | 정원<br>내 | 정원<br>외 | 소계 | 정원<br>내 | 정원<br>외 | 소계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

  

|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| 기회 균형<br>선발 비율(%<br>(B/A×100)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호            |         |    |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호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제4호     | 제5호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제6호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부모가족<br>지원대상자 |         |    | 기초생활수급자,<br>차상위계층, 한부모<br>가족지원대상자 | 국가보훈<br>대상자 | 서해 5도 학생 |         |         | 이동복지<br>보호(종료)<br>대상자 등 | 북한이탈주민 또는<br>제3국 출생<br>북한이탈주민자녀 |         |         | 만학도<br>(성인학습자) |         |         |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원<br>내        | 정원<br>외 | 소계 | 정원내<br>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원외<br>합계   | 정원내      | 정원<br>내 | 정원<br>외 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| 정원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원<br>내 | 정원<br>외 | 소계             | 정원<br>내 | 정원<br>외 | 소계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

### ■ 검증사항

【총 입학자】: <4-가> 최종 등록인원, <4-자> 총 입학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

### ■ 작성지침

【기회 균형 선발】: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각호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체적으로는 위 표에 해당 하는 내용을 의미

【총 입학자】: 2024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,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

【제1호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

【1호\_장애인 등 대상자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4호에 의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한 지원자격에 따른 대상자

**참고**

- 가. 「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 한자
- 나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  - ※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3호: "특수교육대상자"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
  - ※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호: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·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
  - ※ 장애 유형: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적장애, 지체장애, 정서·행동장애, 자폐성장애(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), 의사소통장애, 학습장애, 건강장애, 발달지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
- 다.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 등급자
  - 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- 【1호\_농어촌학생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의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학생
- 【1호\_특성화고 졸업자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의거 특성화고(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) 졸업자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자
- 【1호\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의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
- 【1호\_기초생활수급자】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의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수급권자
- 【1호\_차상위계층】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【1호\_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】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**참고**
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: "수급권자"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: "차상위계층"이라 함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
-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: 법 제4조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- 【2호\_국가보훈대상자】: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- 【3호\_서해5도학생】: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11조에 의거 한 각호의 사람
- 【4호\_아동복지보호(종료) 대상자】: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
  - ※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,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,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【5호\_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】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- 【6호\_만학도(성인학습자)】: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 보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
  - ※ 만학도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2의2호에 따른 성인학습자
- 【기회 균형 선발 비율(%)】: (기회 균형 선발에 의한 입학자 수 / 총 입학자 수) × 100

■ 참고사항

- 기회 균형 선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)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